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제 2019-42호 2019년3월6일(수)

여 수 시 보

시정지표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공 고】

○여수시 공고 제2019-620호 도로사용개세에 관한 공고 ○여수시 공고 제2019-630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/3

/5

회				
람				

여수시 공고 제2019 - 620호

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

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5일

여 수 시 장

1. 도로의 종류 : 농로

2. 노선명 : 농로 326호선

○ 사용개시구간 :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515-39번지 부터

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590-8까지(1차로 0.512km)

○ 사용폐지구간 :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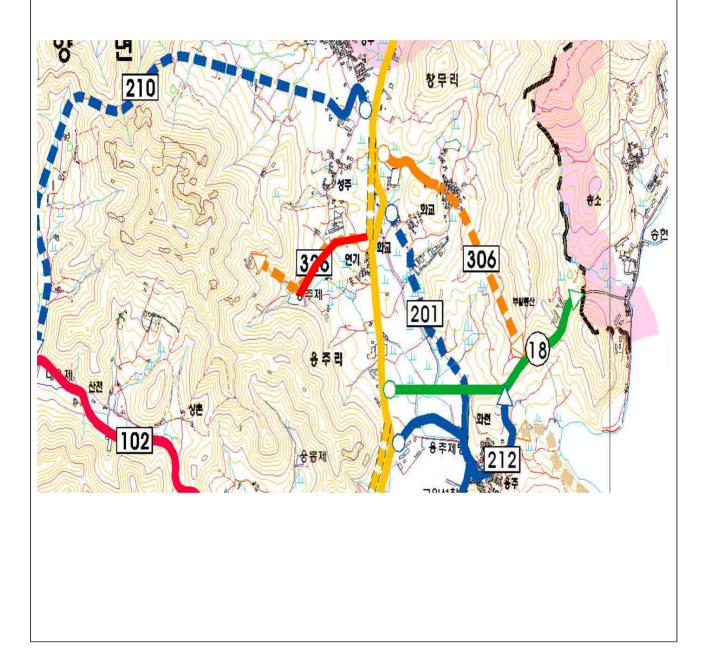
3. 주요통과지 : 없음

4. 사용개시일 : 2019년 3월 5일
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: 2019. 3. 5. ~ 3. 19. / 여수시 도로과

첨부서류: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

사용개시 노선도



여수시 공고 제2019-630호

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

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19. 3. 06.

여 수 시 장

- 1. 지정번호 :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제2019-2호
- 2. 지정 위치·구역 및 면적

위 치	지점	위도	경도	면 적	
	가	34° 52′ 38.906″	127° 45′ 06.689″		
│ │ 전남 여수시	나	34° 52′ 27.000″	127° 45′ 09.000″	10.001	
묘도 B지선	다	34° 52′ 21.000″	127° 45′ 03.000″	12.83ha	
	라	34° 52′ 21.112″	127° 44′ 49.559″		

- 3. 수산자원의 종류 : 새조개
- 4. 관리수면의 관리자 : 여수시장
- 5. 어선·어구의 종류 및 수 : 양식장형망선 4척
- 6.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: 2019. 3. 09.~2019. 3. 31.
- 7. 채 취 량 : 새조개 9톤 이하
- 8. 준수사항 및 제한조건 : 붙임 지정내용 및 조건 참조

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 및 조건

□ 지정내용

- 지정장소 : 여수시 묘도 B지선(12.83ha)
 - 붙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참조
- 지정기간 : 2019. 3. 09. ~ 2019. 3. 31.
- 포 획 량 : 새조개 9톤 이하
- 포획・채취 방법 : 양식장형망선 4척
- 포획·채취 어업인 : 여수시 관리수면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자

□ 지정조건

-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자는 본 수면의 지정 내용(지정 장소, 포획물 등) 을 준수해야 한다.
-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자원 이용이 지속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정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.
-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·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도 우리시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청구할 수 없다.
-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·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피해발생시 이용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새조개 포획·채취량이 승인 받은 9톤 초과시 즉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제하고 지정받은 어선사용승인증을 반납한다.
- 지정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사 전에 협의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 3자가 개입하거나,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이용・관리규정 대로 관리하지 않거나, 어업분쟁 발생, 수산자원관리수면이 목적대로 이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 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요구한 다음의 협의 조건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.

- 협의한 지정조건(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시행, 보상 청구 금지, 어업분쟁 자체 해결 등)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승인구역 인근에 "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"이 추진 중으로 동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, 해상교통 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'19.3.31.까지 승인하고, 어떠한 민원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상 필요하거나 협의 조건을 위반시 본 승인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배상 요구 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구역은 항로와 정박지가 인접하고 있어 채취선이 항로를 횡단하거나 채취 중 항로를 침범하여 선박, 역무선, 해상장비(준설선, 토운선, 예선 등)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 어촌계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.
 - · 작업시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 이탈 방지
 - · 통항선박과 교신이 가능한 감시선과 안전지도선(기 협의된 묘도A지선, 삼 일지선 구역과 별도)이 추가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즉 시 조치
 - · 항계수역을 통항하는 대형선박의 항주파에 따른 소형선박 전복 등 안전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-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분쟁은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채취 작업 전에 어선명단, 작업일정, 비상연락망 등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안전지도선은 선박식별을 위한 자동식별장치(AIS) 및 교신을 위한 무선통신 장비(VHF)를 설치하고 VHF CH67를 상시 청수하여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, 항로횡단 또는 작업 선박 이동시에는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유선(061-840-2552) 또는 무선(VHF CH67)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야간(일몰 후~일출 전)에는 채취 어선 등 관련선박의 항행을 절대 금지하여야 합니다.
- 어로구역 및 작업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
- 협의구역에서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행위시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동 해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산자원관리 해역에 항로표지시설(형상, 등색, 등질 등을 주변 국유표지와 다르게 설치)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수산물 안전관리와 유통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특히 수산물 안전 문제 및 민원 발생시 본 수면의 지정을 즉각 해제할 수 있다.
- 포획·채취전 관리수면 200ℓ의 스티로폼 또는 개량부자로 어장표지시설 (각모서리, 각변 100m당 1개씩 가로 50cm, 세로 30cm의 직각삼감혐 모양인 붉은색 깃발) 설치, 채취선 깃발표시 해야 한다.
- 포획·채취 승인을 받은 어선이라도 관리수면 이외 수역에서 포획·채취로 적발시 승인 취소 된다
- 포획·채취 승인을 받은 자가 타인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 및 양도할 수 없다.
- 관리수면 관리규정 위반자 및 어선은 입어(채취작업) 자격을 박탈하고 참여를 배제한다.
- 폐기물 발생시 현장에서 수거 후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.
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(각종 서류의 작성·비치 등)를 준수하 도록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, 관리수면 관리·이용 사항 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여수시에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.
 - 관리수면의 관리·이용 일지
 - 관리수면의 관리·이용 실적표
 - 관리수면의 회계장부
 -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
 - 관리수면의 작업현황(일일보고)

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신청 위치도(묘도 B지선)

묘도지야 발전 혐의회 수 면 의 위 치 와 구 역 도

전남여수시 수산자원 관리 수면 지정

否

考书: 1/25,000

1. 이 업 의 종류: 수산자원 관리수면

2. 어 업 방 법: 바닥식(패류)형망, 잠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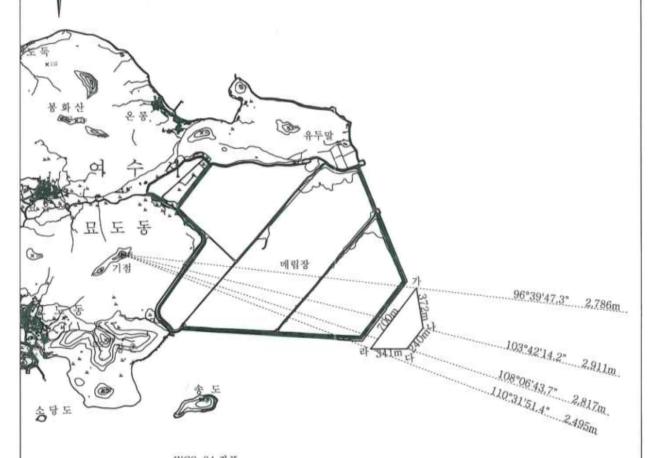
3. 수 면 의 위치: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묘도 지선

4. 기점 및 작점:

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: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묘도 (X=154 083, 0530) 육상기점(여수시 묘도동 묘도 (X=154 083, 0530)

(가): 96도 2,786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 (나): 103도 2,911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 (다): 108도 2,817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 (라): 110도 2,495 미터의 점 및 X, Y 좌표

5, 수면의 구역: 아래 도면에서 (가)(나)(다)(라)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(차면적: 128,300 m²)



		WGS-84 科班
华克	N (X)	E (Y)
int	34" 52'38.906"	127" 45'06.689"
가	153 759 8080	268 738, 5880
4	34" 52'27.000"	127° 45'09.000°
4	153 393, 3400	268 800, 0350
다	34" 52'21.000"	127* 45'03.000"
4	153 207. 2940	268 649. 0360
라	34" 52'21.112"	127" 44'49.559"
rl.	153 208. 1940	268 307.6380

早호	거리(M)
가-나	372m
1-1-1-	240m
다-라	341m
라-가	700m

청 우 기 술 (주)

국토교통부,국토지리정보원등록업체 연안조사 측량업 등록(제 01-2012 호) 여수연락처: 전남 여수시 여서1로 95-1 H.P 010-4602-3889 FAX:(061)662-8967 본 사: (02) 453-7055~6 FAX:(02)453-7098

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기술자 한상수 (등록번호: 60018765)

2019. 01. 2.5